

KOCIC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

우편번호: 05051 / 주소 :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6 (자양동,세경빌딩4층)

전무이사 설태웅 / 이사 백치순 / 담당 채희진 / 전화: (02)454-5114 전송: (02)454-5359 www.cctv.or.kr

문서번호 : 한국감시 제18-332호

시행일자 : 2018. 11. 5.

수 신 : 조합원사 대표이사

참 조 : 관리업무담당부서장

제 목 : 「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 안내

선 램		지 시	
접 수	일자	결 재	
	번호		
처리부서		공 램	
담 당 자			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「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안이 2018.11.1.부터 시행됩니다.

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,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3.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(주요 개정사항)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

<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(2019.11.1.부터)>

1. 주식회사	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, ii)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(70억원) 또는 종업원 수(300명)가 일정규모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개 요건(자산 120억원 미만, 매출액 100억원 미만, 부채 70억원 미만, 종업원 수 100인 미만)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
2. 유한회사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“사원 수 50인 미만”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	
3. 대규모 회사: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	

붙임 :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. 끝.

※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(www.cctv.or.kr)-알림마당-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

한국감시기공업협동조합
이사장 조태야

